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ver. 2019-1.0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I. 표시의무 의미	1	V. 표시의무 준수 예시(권장표시 사례)	6
II. 적용 광고 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2	VI. 표시의무 관련 주요 Q&A	9
III. 표시의무 세부 항목별 개념 및 예시	2	VII. 표시의무 관련 문의처	10
IV. 작성 요령	5		

I

표시의무 의미

-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말함.
- 자격기본법령 관련 규정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 시행일 : 2019. 3. 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표시의무 위반(미준수) 시 처벌 규정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II

적용 광고 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1. 적용 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광고
 - ※ 교육과정 안내,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자격 취득 교육과정 광고 시에도 적용

2. 적용 매체

-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이메일, 카페, 인스타그램 등
- 인쇄매체: 신문, 브로셔,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휴대전화 문자, 서신, 우편, 공문 등

III

표시의무 세부 항목별 개념 및 예시

아래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표시의무 미준수로 판단됨

1. 자격의 종류

- **자격명:** 등록된 민간자격의 명칭
 - '민간자격등록증' 상 자격명과 동일하게 표시

예시	• 자격(종목)명: 심리상담사
----	------------------

- **자격종류:** 등록된 민간자격의 종류
 - 해당 자격이 등록민간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임을 표시

예시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또는 '공인민간자격')
----	-------------------------------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 (등록민간자격일 경우)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 (공인민간자격일 경우)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민간자격공인증서'에 기재된 공인번호 표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 2016-123456 • 공인번호: 교육부 제2016-01호
----	--

※ 소비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연결 기능 권장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발급기관명:**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 '민간자격등록증' 상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
- **연락처:** 소비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 및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표시
- **소재지:**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명: ○○○○협회 •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02-123-4567 - 이메일: ○○○@○○○.com - 홈페이지: www.○○○.kr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	---

4.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자격 취득을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모든 비용으로,
 - 교육과정 연계시 교육과정비 및 교재비, 자격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보수교육비, 연수비, 자격 갱신비용 등 상세히 명시
- **환불:**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불한 비용별 환불 규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을 위한 총비용: ○만원 • 총비용의 세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검정료): ○만원 ② 교재비: ○만원 ③ 자격증 발급비: ○만원 • 환불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검정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공제 후 환불 ② 교재비: 교재 반환 시 100% 환급 ※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③ 자격증 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	---

5.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아래의 내용에 ‘자격명’을 적시하고 그대로 명시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동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 부분 공인의 경우, 공인 이외 등급을 자격명과 함께 명시(예: ○○자격, 0급)

6.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실제 광고주(평생교육시설, 학원 등)가 다른 경우의 표기 내용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실제 광고기관(교육기관, 광고 및 마케팅 업체 등)이 다를 경우, 그 사실과 각 기관에 대한 정보를 표기

- 즉, 평생교육시설 등이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광고하는 경우(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 광고주),
- ① 앞서 언급한 ‘표시의무 세부 항목’을 표기하고,
- ② 광고주(평생교육시설 등)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이 별개임을 알리고,
- ③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를 추가적으로 표기

IV

작성 요령

1. 배치(위치)

-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포함)
 - 표시의무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예: '민간자격증 소개' 메뉴 마련)
- 인쇄매체(신문, 소책자, 전단지 등)
 - 광고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 표시의무의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인쇄매체의 광고면적 등을 충분히 검토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 광고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2. 글자색 및 크기

-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
- 주 표시면에 일반적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pt) 이상, 줄 간격 130% 이상으로 하나,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12픽셀 이상

바탕체 글자크기에 준한 활자 크기 예시

10포인트(PT)
 자격명: ○○○지도자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123456

13포인트(PT)
 자격명: ○○○지도자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123456

V

표시의무 준수 예시(권장표시 사례)

광고주 또는 교육과정운영기관

=
(일치)

민간자격관리자(자격 발급자)

※ 1개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정보

자격명	○○전문가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00	자격발급기관	(사)△△△△협회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00만원 - 응시료: 00원 - 자격발급비: 00원	환불규정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사)△△△△협회	대표자	○○○
연락처	02)○○○-○○○	이메일	abc@○○○.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	홈페이지	www.○○○.com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다수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총 비용 및 세부 내역
1. ○○안전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9-00***1	△△△협회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2. ○○코딩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9-00***2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육비: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3. ○○교육강사	등록 민간자격	2019-00***3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4. ○○상담사	등록 민간자격	2018-00***4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5. ○○복지사	등록 민간자격	2018-00***5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6. ○○분석사	등록 민간자격	2017-00***6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육비: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협회 대표자: ○○○ 연락처: 02) ○○○-○○○○ 이메일: ○○○@mail.net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 ○○○○ 홈페이지: www. ○○○.co.kr		환불규정	1.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공제 후 환불 2. 교재비: 교재 반환 시 100% 환불 ※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3. 교육비: 기 납부 수강료 전액(A)-(A) * $\frac{\text{수강포기시까지의 이용기간}}{\text{전체이용기간}}$ 4. 자격발급비: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소비자 알림사항	① 상기 ○○안전지도사 포함 6개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홈페이지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자격별로 '총 비용 및 세부내역', '환불규정' 등이 다른 경우 각각 명시

광고주 또는 교육과정운영기관	≠ (불일치)	민간자격관리자(자격 발급자)
------------------------	------------	------------------------

〈자격정보〉

자 격 명	OO전문가	자 격 의 종 류	등록민간자격
등 록 번 호	2019-0000	자 격 발 급 기 관	(사)△△△△협회
총 비 용 (세부내역)	총비용: 00만원 - 응시료: 00원 - 자격발급비: 00원	환 불 규 정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기관정보〉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광고주)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기 관 명	(주)□□□교육원	연 락 처	02)000-00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000동000
대 표 자	000	이 메 일	abc@000.com	홈페이지	www.000.com

2) 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사)△△△△협회	연 락 처	031)000-000	소 재 지	경기도 000동000
대 표 자	000	이 메 일	def@000.com	홈페이지	www.000.com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OO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VI

표시의무 관련 주요 Q&A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의 시험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표시의무 준수 사항을 꼭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A. 네. 표시의무는 소비자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시의무 사항은 주 표시란을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표시란'이란 무엇인가요 ?

A. 주표시란은 소비자가 민간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상, 민간자격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자격 소개란(메뉴)'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도 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민간자격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격에 대하여 표시의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A. 네. 표시의무 준수 사항은 자격별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자격 수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한 화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연결 또는 파일(한글, PDF 등) 탑재를 통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쇄물 등을 통해 자격을 광고한다면 앞서 안내한 '권장표시사례의 인쇄매체 지면광고'를 참고하여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부분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A. 부분공인이 있는 민간자격일 경우, 공인 급수와 비공인 급수에 대한 표시의무 사항을 분리하여 소비자가 구별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명: ○○○자격 • 등급별 정보: 1~2급(공인민간자격), 3~5급(등록민간자격)
-----------	--

Q. 기재란이 협소한 경우(휴대전화 문자 혹은 팸플릿, 포스터 등에 광고), 표시의무 사항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광고 기재란이 협소하더라도 표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따라서, 광고 실시 전에 표시의무 명시 분량을 감안, 광고 매체 및 면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표시의무 관련 문의처

-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표번호 044-415-5000) 민간자격센터
- 상기 외 추가적인 연락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
 - ➔ 민간자격 관련 문의처 <바로가기> 클릭